2018년 보건복지부「대체교사 지원사업」6회기 신청 안내

보건복지부와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사의 연가사용,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고, 이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여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1. 지원대상

-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(어린이집, 육아종합지원센터 등)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(보육교사, 특수교사)
 - 시·군·구에 임면 보고된 자에 한해 임면보고일 기준으로 근무기간 계산
 - ※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,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
- 신청인원이 파견 가능한 대체교사 인원보다 많을 시, 소규모(보육교사 5인 이하) 어린이집의 장기 근속자 우선 지원

2.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및 지원일수

구분	우선순위	지원 사유	지원 일수	첨부서류	신청방법	
상시	1	보수교육 (직무교육 우선 지원)	5일 최대 10일	보수, 승급 교육확인서	사전 식장 나서, (2) 전	
	2	연가 (본인 결혼 우선 지원) ※ 본인 연차 수에 따라 신청가능, 회차 별 신청 시 최소 1일 ~ 최대 5일	1~5일 최대 5일	결혼식장 계약서, 청첩장 등		
	3	예비군 훈련	훈련 기간	증명서		
		건강검진*	1일	건강검진서류		
구분	우선순위	지원 사유	지원 일수	첨부서류	신청방법	
긴급	최우선	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(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)	기간 제한없음	지자체공문 및 경찰서 접수증	수시 신청 (서면신청)	
	가족상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일			
	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2일	사망확인서,		
	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2일	가족관계증명서		
	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일			
	본인 질병 등 사고	감염성 질환, 긴급 수술, 교통사고 등	1~5일 최대 10일	TELL		
	모성보호	유산 (~11주미만(5일)/12~15주(10일))	진단서, 5일 진료확인서, 최대 10일 수술 혹은 입원확인서			
		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(산전관리,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)	1일 최대 3일			

^{*「}영유아보육법」시행규칙 제33조.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: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실시

※ 연차의 경우 보육교사 당 회기별 1회 신청 가능(연 6회)

- ※ 보육교사 지원 사유별(상시)로 중복 지원하는 것이 가능함(단,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)
- ※ 긴급 사유 신청은 사전신청 지원 건에서 조율되어 지원됨

3. 6회기 대체교사 신청 방법

- **(지원기간)** 2018. 11. 5.(월) ~ 12. 28.(금)
- (신청기간) 2018. 10. 1.(월) ~ 10. 20.(토)

구 분	1회기	2회기	3회기	4회기	5회기	6회기
지원시기	1~2월	3~4월	5~6월	7~8월	9~10월	11~12월
신청시기	전년도 12월	2월	4월	6월	8월	10월

- (신청방법) 원장이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대체교사 신청하되, 긴급사유에 따른 요청 시 상시, 유선·Fax 등을 통해 신청 가능
 - (위치)보육통합정보시스템 → ①보육교직원 → ②대체교사 → ③대체교사 신청하기 → ④휴가관련 정보 기입 → ⑤어린이집안내서 작성 후 '저장' 클릭 → ⑥어린이집 안내서 버튼 옆 '저장' 클릭
- (확정)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의해 어린이집 확정 및 대체교사 배치
- (선정 어린이집 공지) 2018. 10. 24.(수) 센터 홈페이지 및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지 (반드시 선정 공지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)
- (문의) 대체교사관리자(조남경) 052-246-0601

